

#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3월 20일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3월 23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2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

-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(2026. 4. 3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이홍섭 해양산업과장)

가. 개정이유

- 2025년 8월 영일대해수욕장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말에 의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백사장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차마 출입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차마의 출입금지 조항 정비(안 제15조)

- 현 행: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7호가목1)자동차, 2)건설기계, 3)원동기 장치자전거는 백사장에 출입 금지
- 개정안: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7호에 해당하는 차마 전부 백사장에 출입 금지

다. 관계법령

- 「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장준호)

- 본 개정조례안은 해수욕장 이용객이 말에 의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백사장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차마 출입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백사장 출입금지 규정을 상위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, 향후 행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근거가 명확해져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므로,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
### 5. 토론의 요지 : 없 음

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